

# 지원금 관리 규정

제정 2017.12.08. 규정 제101호  
개정 2019.12.20. 규정 제1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의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3조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
4.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의 공모)** ① 지원금 지원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는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원사업 기간
  6. 그 밖의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 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개정 2019.12.20.>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신청인이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지 여부 <신설 2019.12.20.>
6. 그 밖의 재단의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 여부 <개정 2019.12.20.>

- ② 제1항의 지원금 교부 결정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제5조제2항에 의한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는 이사장이 교부를 결정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⑤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예산편성의 원칙)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1.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단체 대표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당해 지원사업 수행과 무관한 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단체 운영경비
  3. 해당 지원사업 수행과 무관한 단순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책상 필요한 지원사업 등 이사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2. 법인 단체 대표자의 창작활동에 따른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20.]

제8조(지원금의 교부조건)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지원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결정통지) 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해 사업개시 전에 교부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지원사업자는 교부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속의 지원사업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편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자는 변경내용이 사소할 경우에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단이 사업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도 그 내역이나 사유에 따라 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4조(교부결정의 취소)**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8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원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의 실적보고 및 평가)**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기간에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 또는 실적보고서·사업비 정산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정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15조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정산증빙서류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정산서에 의하여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산결과 제출 시에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또는 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지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18조(타 규정의 준용)** 별도의 사업지침이 있는 경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 부 칙 <제101호,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지원금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제130호, 2019.12.20.>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